



서울대학교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6. 9. 6.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44호, 2016. 9. 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58조제2항에 따른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개정 2011. 4. 29., 2012. 7. 12., 2014. 7. 14.]

제2조(정의) 석사·박사통합과정(이하 "통합과정"이라 한다)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 [개정 2011. 4. 29.]

제2조의2(설치 및 운영)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(부)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[개정 2014. 7. 14.]

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29.]

제3조(선발대상) 통합과정의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.

[개정 2011. 4. 29., 2014. 7. 14.]

제4조(선발인원)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학과(부)별 입학정원 범위에서 각 대학(원)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 [개정 2011. 4. 29.]

제5조(전형방법) 통합과정의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각 대학(원)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 [개정 2011. 4. 29.]

제6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2. 7. 12., 2014. 7. 14.]

②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4. 7. 14.]

제7조(이수학점)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[개정 2011. 4. 29., 2014. 7. 14.]

제8조(박사과정 인정) ①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4. 7. 14.]

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증으로 발급한다.

제9조(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)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1. 4. 29.]

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(부)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(부)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[신설 2011. 4. 29., 개정 2014. 7. 14.]

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6. 9. 6.]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(원)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신설 2011. 4. 29., 개정 2016. 9. 6.]
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중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제89조제1항 및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」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2. 7. 12., 2014. 7. 14., 2016. 9. 6.]
- ⑥ 제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. [신설 2016. 9. 6.]

제10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(원)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4. 7. 14.]

제11조(박사학위논문 제출)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(원)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,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2. 7. 12., 2014. 7. 14.]

제11조의2(박사학위의 수여)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89조제2항 및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 29., 개정 2014. 7. 14.]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2044호, 2016. 9. 6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